서울特別市永登浦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

審 査 報 告 書

행정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2년 8월 19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
나. 회 부 일 자 : 1992년 8월 20일

다. 상 정 일 자 : 1992년 9월 21일

〈제13회 임시회(휴회중)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상정〉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總務局長 金榮俊)

가. 개정이유

구 직제 개편으로 증원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정하고 이와 병행하여 기존 가스 담당 별정직의 자격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 6급 상당으로 되어 있는 가스계장의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함.

○ 고압가스 관리기사의 자격기준을 현실에 맞게 격상조정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金熙中)

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(안)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첫째, 구 직제 개편으로 산업과에 가스계가 신설되므로 인해 증원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정하고

또한 기존 가스 담당 별정직의 자격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.

따라서 〈별표1〉 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기준중 5. 위험물 취급 분야를 별첨 신·구조문대비표와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추후 회의록 배부 참조

5. 심 사 결 과 원안대로 가결

(재적위원 11명

출 석 10명

찬 성 10명

반 대 없음)

서울特別市永登浦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

의 안 번 호	96

제 출 년 월 일 : 1992년 8월 19일
제 출 자 : 영 등 포 구 청 장

1. 개정이유

○ 구 직제개편으로 증원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정하고 이와 병행하여 기존 가스담당 별정직의 자격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임.

2. 주요골자

○ 6급상당으로 되어있는 가스계장의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함 (별표1)

○ 고압가스관리기사의 자격기준을 현실에 맞게 격상조정함. (별표1)

3. 개정근거

○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

○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一 별 첨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서울特別市永登浦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〈별표1〉 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중 5. 위험물 취급분야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위험물 취급분야

직명(위)및 업무구분	직 급	직 무 내 용	임 용 자 격	비고
가스계장	6급상당	가스행정 및 안전관리	1. 가스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2. 가스기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분야 3년이상 근무 경력자 3. 7급(상당)이상 공무원으로서 가스행정분야 5년이상 근무 경력자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적합한 자.	
고압가스 관리기사	7급상당	〃	1. 가스기사 1급자격증 소지자 2. 가스기사 2급 또는 고압가스기계, 화학취급기능사 1급으로서 당해분야 4년이상 근무 경력자 3. 8급 (상당)이상 공무원으로서 가스행정분야의 근무경력 3년이상인 자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적합한 자.	
	8급상당	〃	1. 가스기사 2급 또는 고압가스기계, 화학취급기능사 1급 자격증 소지자 2. 고압가스기계, 화학취급기능사 2급 소지자로서 당해분야 3년이상 근무 경력자 3. 9급(상당) 이상 공무원으로서 가스행정분야의 근무경력3년이상인 자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적합한 자.	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임용자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된 고압가스 관리기사 (7~8급상당)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임용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.

新·舊條文對備表

〈별표1〉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

5. 위험물 취급분야

現在					改正(案)				
직명(위)및업무구분	직급	직무내용	임용자격	근거	직명(위)및업무구분	직급	직무내용	임용자격	근거
			〈신 설〉		가스계장	6급상당	가스행정 및 안전관리	1. 가스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2. 가스기사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분야 3년이상 근무경력자 3. 7급(상당)이상공무원으로서 가스행정분야 5년이상 근무경력자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적합한 자	
고압가스 관리기사	7급 8급 상당	고압가스 안전관리	○ 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 ·가스기사2급 ·고압가스 기계기능사2급 ·고압가스 화학기능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적합한 자	고압가스 안전관리법시행령 제11조	고압가스 관리기사	7급 상당	〃	1. 가스기사 1급 자격증 소지자 2. 가스기사2급 또는 고압가스 기계, 화학취급기능사 1급으로서 당해분야 4년이상 근무 경력자 3. 8급(상당)이상 공무원으로서 가스행정분야의 근무경력 3년이상인 자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적합한 자.	
						8급 상당	〃	1. 가스기사2급 또는 고압가스 기계, 화학취급기능사 1급 자격증 소지자 2. 고압가스기계, 화학취급기능사 2급 소지자로서 당해분야 3년이상 근무경력자 3. 9급(상당)이상 공무원으로서 가스행정분야의 근무경력 3년이상인자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적합한 자.	